

국가 시대의 인터넷 자유³⁸⁾

필자 제레미 말콤(Jeremy Malcolm)³⁹⁾

번역 오병일

개요

지난 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 세계회의(WCIT)는 정부간 기구의 인터넷 통제 확대에 대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다. 이 두려움은 정당한 것이었지만, ITU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인터넷이 이미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 종종 정부에 의해서, 국내적/세계적 과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에 의해서 –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이는 또한 때로는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이용자의 자유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각 수준에서의 적절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는 국가적 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계적 수준에서도 사실이다. 특히,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세계적으로 적용가능한 원칙의 개발이 소중하고 중요한 어떤 영역이 있다. 일반적인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계적 원칙이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공공정책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세계적인 멀티스тей크홀더 절

차나 기구의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위원회’ (CSTD) 산하에 ‘강화된 협력’에 대한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Enhanced Cooperation, WGEC)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공백을 메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의 진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제의 개발에 참여하는데 매우 주저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현상유지가 계속되거나 혹은 (ITU와 같이) 덜 민주주의적이고 멀티스тей크홀더에 기반하지 않은 대안들이 전면에 나설 것이다. 이 논문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SIS)가 위임한 ‘강화된 협력’을 실현할 하나의 가능한 방식을 제안한다. 그러나 그 주된 요지는 여기서 제안한 방식과 무관하게, 지금이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한 더 공식적인 제도적 플랫폼의 장점을 시민사회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38) 이 번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13년 인권단체협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2014년 발간하는 『인터넷거버넌스를 말하다』 라는 책에 실릴 예정입니다.

39) 국제소비자연맹 수석정책관, jeremy@ciroap.org

도입

지난 해, 유럽에서 논란이 많았던 위조방지무역협정(ACTA)과 미국의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 및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 양자 모두 중간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인터넷 이용을 추적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 의 패배에 뒤이어, 서구의 디지털 활동가들은 자연스럽게 인터넷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들에 대한 민감성이 더 높아졌다.

지난 12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의 모든 인터넷 관련 제안에 그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반대했는지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비록 그 제안들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기존의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멀티스тей크홀더 방식이 아니라, 순전히 정부간 절차를 통해서 정부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안,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들을 더 폭넓게 다루려는 정부의 움직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두려움의 기저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가정이 있는 듯하다 :

1. 정부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2. 정부가 인터넷 거버넌스에 개입한다면, 그것은 단지 국가적 수준에서이며, 세계적 수준에서는 안 된다.
3.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개입한다면, ITU에 의지하기 보다는 그들의 관심을 다룰 수 있는 기존의, 아래로부터의, 멀티스тей크홀더 체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세 가정 모두 틀렸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인터넷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정부들이 정부간 메커니즘을 이용하도록 추동하는 힘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며, 우리가 바로 지금 이 힘을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의 관심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간과하는 것이다. 사실, 세가지 가정 모두 틀렸음이 입증된다면, 정부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더 수용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 가정들을 차례로 검토해보도록 하자.

국가적 수준에서 정부의 필요성

정부가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정당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첫번째 가정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마치 내가 허수아비 주장을 내세운다고 비난받을지도 모르겠다. - 그러나 이는 사이버-자유주의⁴⁰⁾라고 불리는 진지한 학파이며, "인터넷 자유" 운동으로서 (특히 미국의 활동가들에 의해) 온라인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는 관점으로부터 거의 공리처럼 유통된다. 더구나 이 사이버-자유주의 관점은 정치적 자유주의자들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정치

40) 사이버-자유주의자 및 인터넷 예외주의자들과 보수적인 "반예외주의" 사이의 고전적인 논쟁은 골드스미스(Jack L. Goldsmith)의 사이버 아나키에 대한 반대 L.65 U. Chi. L. Rev. 1199 (1998) 과 포스터(David Poster)의 답변 " '사이버 아나키에 대한 반대'에 대한 반대", 17 Berkely Tech.L.J. 1365(2002)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팀 우(Tim Wu)는 골드스미스와 함께 <누가 인터넷을 통제하는가? 국경없는 세상에 대한 환상> (Oxford University Press, 1996)에서 그의 주장을 발전시켰다.

적으로 진보적인 활동가들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정부의 개입을 더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터넷 예외주의로 표현되는데, 인터넷은 다르고 더 규제방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사이버-자유주의적 명제를 수용하는 것은, 국가적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영역들에, 정부가 개입해야 할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 네트워크 운영자가 특정한 형태의 인터넷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망중립성 규칙을 통과시키는 것

- 차세대 IP 버전인 IPv6로의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 현재까지 시장이나 규범의 힘이 명백하게 실패해온 작업이다.⁴¹⁾

- 일부 산업 분야에 의해 채택된 자발적인 미약한 실행규약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의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강제력있는 표준을 수립하는 것

- 지역의 소비자들이 도시 거주자와 동등하게 정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 기본적인 수준의 인터넷 서비스를 보장받도록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확대하는 것

1993년에, 혹은 심지어 2003년에도 우리는 시장에 유리한 해석을 허용했고 이 영역에서 규제를 미루었다. 그러나 2013년,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으면서 오픈 인터넷에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이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개입 없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은 점차 믿기 어려워 보인다.

이것은 정부의 개입이 매우 자주 인터넷 이용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것-예를 들어, 공정 이용과 혁신을 제한하는 지적재산권의 형사적 집행 조치를 통해, 우리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밀스러운 감시를 통해, 사이버 전쟁에 사용할 목적의 악성 소프트웨어 생산을 통해, 혹은 인터넷 전화 (mVoIP)와 같은 특정한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을 금지함으로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인터넷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답이 아니다. 최소한 산업 또한 종종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웹사이트는 우리도 모르게, 혹은 우리의 동의없이 우리의 가장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하고, 저작권자와 ISP들은 파일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용자의 인터넷 접근을 옥죄는 비밀 협약을 맺고, 금융 중개자들은 위키릭스의 자금을 막기 위해 공모한다. 우리는 국내의 소비자 법률, 경쟁법, 혹은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보호법, 혹은 세계 조치, 개발 보조금, 공동규제 규약 등 더 유연한 조치를 통해서 기업들의 나쁜 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위키릭스의 사례와 같이) 정부와 기업이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

41) "인터넷의 아버지"인 빈트 서프(Vint Cerf)는 IPv6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옹호했던 사람들 중 한명이다. : 제니퍼 스콧(Jennifer Scott), "스프가 IPv6로의 이행을 위해 정부 인센티브를 요구하다" 2010.11.11, <http://www.itpro.co.uk/628531/cerf-calls-on-government-incentive-for-ipv6-migration>

하는데 공모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정부도, 시장도 온라인 권리 침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호소해야할까?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또 다른 거버넌스 메커니즘-예를 들어 규범, 혹은 기술(잠시 후에 이와 같은 것을 더 얘기하겠다)-을 고려하거나, 혹은 세계적 수준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세계적 수준에서 정부의 필요성

이는 우리를 다음 가정으로 이끈다. 즉, 정부가 때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단지 국가적 수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국가적 수준에서 내린(우리 중 다수가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결정이 국경 밖으로 전파되는 일정한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터넷 자체가 국경이 없고, 그래서 정부에 의한 것이든, 기업에 의한 것이든, 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정책이(그 정책 결정자들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 세계 다른 곳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1년에 미국 정부기관은 미국법에 따른 권한을 주장하며 rojodirecta.com 과 rojodirecta.org 도메인을 압류했는데, 그 도메인들은 스페인 회사의 소유였으며 스페인법에 따라 합법적인 것으로 결정되었었다.(그 도메인들은 이후에 반환되었다.)⁴²⁾ 마찬가지로, 콘텐츠

가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근거해서 삭제되었을 때, 이는 전 세계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왜 그 이용자들은 그것에 대해 참여할 권리가 없는가?

그들(이용자)이 그런 권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을지의 문제로 돌아온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이버-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을 기술 혹은 규범의 이용에 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전자의 사례로는, 전반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온라인 공간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기 위해, 기술적인 지식이 있는 이용자들이 PGP나 Tor와 같은 강력한 암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간들을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만드는 인터넷 기술들의 특성들이 또한 정부나 기업의 남용에 반대하는 보호막으로서의 효과를 제한하기도 한다. 기술은(온라인 사기에 대한 국경을 초월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덜 효과적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규범은 유용할 수 있지만, 자기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인터넷 규범을 강제하는 군중들의 힘에 의존할 수 있다. 이것이 지난 해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를 물리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것은 국내적 수준에서 민주적 과정이 취약하거나 부패한 곳에서 중요하지만, 정부가 국내적으로 인기가 없는 제안들의 “정책 세

42) 네이트 앤더슨(Nate Anderson), “정부가 패배를 인정하고 압류된 Rojodirecta 도메인을 되돌려주다”, 2012.8.30.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2/08/government-goes-0-2-admits-defeat-in-rojodirecta-domain-forfeit-case/>

탁"을 위해서, (ITU와 같은) 전통적인 정부간 기구나 (ACTA와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와 같은) 무역협상의 민주적 취약성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훨씬 더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책 토론의 분위기가 사이버-자유주의의 현수막이 휘날리는 자극적인 열정에 휩쓸려 들어갈 때, 그 군중들은 또한 폭도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커비스트(해커 활동가) 그룹인 어나니머스(Anonymous)는 정부, 광신도들, 기업들의 위협에 직면한 온라인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많은 좋은 일들을 해왔다. 그러나 또한 WCIT 회의에서 ITU 웹사이트를 공격함으로써 그 회의에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통로를 위태롭게 하여 시민사회 참여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어나니머스와 같은 풀뿌리 그룹을 통한 직접 행동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소중하기는 하지만, 인터넷 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우리의 주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보안 전문가이자 저자인 브루스 쉬나이어(Bruce Schneier)는 최근 이렇게 썼다 :

대중들은 때로는 SOPA/PPA, 아랍의 봄 등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조직화될 수 있고 권력자들의 어떤 행동을 막아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되지 않는다. 조직되지 않은 자들은 조직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가고, 권력자의 이해관계는 주도권을 되찾는다.⁴³⁾

정부와 기업의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세계적 수준에서 조직화되는 것

은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의 국경을 초월한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그들과 (협의)테이블에 앉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것은 TPP에서 비밀협상의 관객으로 참여하거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청중석의 뒷 줄에 앉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도 우리가 운이 좋을 경우이다. 다른 이슈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슈들을 다룰 세계적인 논의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진화의 필요성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 수준에서 인터넷 정책 토론에 온라인 활동가들의 더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참여 수단인, 자율규제, 기술기반 및 풀뿌리 기반의 시도들이 실패한 이후에 존재하는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지 최소한 고려해 봐야 한다. 어떤 이슈 영역의 경우에는, 거의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인터넷 표준 개발과 IP 주소 및 도메인 이름의 할당에서는 IETF, W3C, ICANN과 같은 기관을 통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세계적 메커니즘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안, 사이버범죄, 지적재산권 집행,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온라인 표현의 자유 등 다른 영역에서는, 우리는 현재의 제도적 방식의 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조직, 시스템, 절차는 산업이 주도하는, 상향식의, 합의 기반의 절차를 통해

43) 브루스 쉬나이어, “권력과 인터넷”, 2013.1.31, http://www.schneier.com/blog/archives/2013/01/power_and_the_i.html#ic=35.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하고 있기”⁴⁴⁾ 때문에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의 어떠한 개혁도 필요없다는 취지의, 위에서 강조한 세 번째 가정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말이다.

물론 이 이슈들과 관련된 세계적인 토론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 정책 결과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약하거나 (인터넷거버넌스포럼 IGF의 경우),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미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OECD, APEC, WIPO, CSTD, TPP 뿐만 아니라 ITU 자체를 포함하여, 이러한 경우가 훨씬 많다.)

종종 이러한 기존의 체제에서 배제되는 것은 시민사회이다. ACTA에서 그랬고, 현재 TPP에서 그런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배제되기도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는 바깥으로 밀려나고, G8이나 OECD와 같은 선진국 그룹이 이끄는 것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OECD는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도를 상당히 분명하게 드러내 왔는데, 최근의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터넷의 세계적 속성과 인터넷 중개자들이 종종 제공

하는 초국경적 서비스를 고려할 때, 비즈니스 영역에 효과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중개자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 정책 개발을 위한 접근이 국제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OECD는 그러한 원칙의 도출을 돕고, 그 확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었다.⁴⁵⁾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는 현재 OECD의 또다른 인터넷 정책 문서인 ‘인터넷 정책결정에 대한 2011년 성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집행에 있어서 중개자들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부분적으로 이유가 되어, OECD의 ‘시민사회 정보사회 자문위원회’는 그것을 지지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이 성명은 환영할만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그것이 세계적인 논의 공간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문서가 세계적으로 정당한 것이 되기는 힘들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이와 같은 미국 주도의 기획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열외로 취급하면서, 더 폭넓은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ITU를 “인터넷 자유의 적”⁴⁶⁾으로 돌리는 것은 위선적이다.

이와 같이 좁은 기술 영역 바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폭넓은 멀티스테이크홀더 체제가 아니라, 강력한 정부와 기업들이 인터넷을

44) 이러한 관점이 특정하게 공식화된 것은 ITU에 제출된 시스코의 의견서이다. 아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itu.int/md/S12-WTPF13PREP-C-0014/en>, 그러나 심지어 시민사회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해왔다. 해럴드 펠드(Harold Feld)가 2012년 2월 5일, WCIT에 대한 미 하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라. <http://www.publicknowledge.org/harold-felds-wcit-hearing-testimony-feb-5-2013>.

45) OECD, 공공정책 목표 진전을 위한 인터넷 중개자의 역할, (OECD publishing, 2011), p.194. <http://dx.doi.org/10.1787/9789264115644-en>

46) 연방통신위원회(FCC), 맥도웰(Robert M McDowell) 위원의 성명, 2013.2.5. <http://docs.house.gov/meetings/IF/IF16/20130205/100221/HHRG-113-IF16-Wstate-McDowellR-20130205.pdf>.

위한 자신들의 규칙을 만들고 그것들을 나머지 전 세계에 부과하려는 노력이다. 우리는 그것을 ACTA, SOPA, PIPA에서 보았고, TPP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며, ITU와 심지어 OECD에서도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위와 유사한 배제적인 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것이 인터넷 거버넌스 현황(status quo)의 맨 얼굴이며,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인터넷 원칙의 필요성

여기 일석이조로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 방식의 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기회가 있다.

1. OECD와 같은 더 협소한 기구에서 이미 개발된 것과 같은, 세계적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공유된 원칙의 개발에 있어 개발도상국에 더 동등한 대표권을 부여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ITU가 장악하게 하려는 현재진행중인 전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2. 공공 인터넷 옹호자, 감시자, 그리고 규범, 표준, 규약의 풀뿌리 개발의 참여자로서의 그들의 기존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면서, 시민사회의 인터넷 권리와 자유 활동가들이 세계적 인터넷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견고한 제도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것.

동시에 우리는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는 만큼 이에 대한 침해들 쉽게 허가할 수 있는 정부간 기구가 무방비적으로 확장되지 않기를 원한다.

민주적인 책임성 메커니즘은 세계적 수준에서 더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적 수준에

서 인터넷의 구속력있는 규칙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 최소한 멀티스тей크홀더 감독 메커니즘이 매우 강고하게 자리잡을 때까지는 말이다. 이는 그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자칭 인터넷 자유 활동가들은 WIPO에서 시각장애인 용도로 만들어진 저작물의 국경을 넘어선 교환을 허락하는 내용의 새로운 세계적 조약을 현재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조약이다.

훨씬 더 종종, 세계적 거버넌스를 연성법(soft law) 혹은 원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더 안전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러한 원칙들을 국가적 수준에서 구현하는데 있어 더 유연함을 제공하고, 너무 종종 법적인 논쟁으로 빠져드는 조약 문구의 경우보다 더 강한 문구가 합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결정자들은 연성법 기구를 구성할 때에 공익 대표들의 참여에 훨씬 더 열린 경향을 보인다.

그러한 연성화된 세계적 원칙들의 개발은 국내적 법률가, 인터넷 엔지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업가들이 (그러한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경 밖의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국가들이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세계적인 규범의 침해에 책임을 지도록 보장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인권선언 자체가 연성법 체제로 시작되었다. 단지 1948년에 그것이 통과된 지 30년이 지나서야 그 조항들이 국제 협약(그리고 그것의 영향을 받은 다른 경성법이나 조약들)의 형태로 강제력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정부, 기업영역, 시민

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공공정책 관심사를 다룰 수 있는, 구속력 없는 원칙의 개발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이것은 매우 무리한 요구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물론, 많은 경우에 그러한 과정의 결과물은 조약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 특정한 이슈에 대한 세계적 원칙의 개발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은 그 이슈가 국내 의회에서, 혹은 자유 시장에서, 혹은 기술적인 방법과 같은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위해 실현되지 못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쨌든 사이버-자유주의자의 구미에는 더 맞을 것이다.

실제적인 예를 든다면, 미국에 기반한 사업체가 세계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웹사이트를 개발할 경우, 그 사업체 및 미국의 규제자 모두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위한 세계적 기준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원칙들은 영향을 받는 인터넷 이용자, 사업자, 그리고 전 세계 정부들의 충분한 참여 속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내 법률, 기술적인 표준, 자율 규제 등의 이러 저러한 조합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마도 이전보다는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을 조금 더 잘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어쨌든 세계적 표준의 개발은, 우리가 그것에 관여하든 하지 않든,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APEC은 초국경적인 프라이버시 표준과 관련된 많은 작업을 (시민사회의 별다른 참여없이) 해왔다. OECD의 작업은 이미 언급한 바 있고, ITU도 비슷한 야심을 가지고 있다. ITU는 2013년 5월에 있을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WTPF)이 “토론을 활성화하고, 현재진행형의 세계적 ICT 정책들, 세계적인 규제 및 표준화 노력들을 이끌기위해 공유된 비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의견서(Opinions)’ 형태로 표현된 멀티스테이크홀더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계획되었다”고 설명한다.⁴⁷⁾

바쿠(Baku)에서 열린 지난 IGF 회의에서, 멀티스테이크홀더 자문그룹(MAG)은 다른 곳에서 개발한,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 대한 기존의 많은 성명문들의 개요를 종합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첫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IGF가 그러한 원칙들의 실제적인 개발을 위한 더 포괄적인 포럼으로 활용될 수 있기는 커녕, MAG이 IGF로 하여금 이러한 과제를 맡도록 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IGF의 지난 7년간의 기록을 보면 그럴 것 같지 않다. 이를 보면, 지난 해에 미국정부가 180도 방향을 전환하여 인터넷 공공정책 개발을 위한 별도의 체제나 기구를 설립하기 보다는, IGF가 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을 때, 왜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미국에게 해를 떤면 하라고 했는지 알 수 있다.

47) <http://www.itu.int/en/wtpf-13/Pages/overview.aspx> 를 보라.

강화된 협력의 필요성

개발도상국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12월 - 사실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었던 WCIT 회의와 같은 시간에 -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사실상 훨씬 더 중요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대부분은 그것을 간과했다. 그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과 모든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의 의견을 구하고, 집약하고, 검토함으로써, 튀니스 어젠다에 포함된 강화된 협력에 관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의 위임사항(mandate)을 검토하기 위하여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위원회(CSTD) 의장에게 강화된 협력에 대한 워킹그룹을 설립할 것을 요청한다.

강화된 협력 워킹그룹은 위원회의 다섯개 지역 그룹에 속한 정부, 그리고 다른 모든 이해당사자, 즉 기업영역, 시민사회,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정부간 기구, 국제기구에 속한 초청자들이 (이들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동등하게 선출되어야 한다) 균형적으로 대표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위원회 의장에게 요청한다.⁴⁸⁾

이 결의안은 난데없이 나온 것이 아니다. 사실 이것은 2005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의 튀니스 어젠다의 최종 결과문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관심이 필요한, 영역을 가로지르는(cross-

cutting) 많은 국제적 공공정책 이슈들, 그러나 현재의 체제에 의해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슈들이 있다”는 출발점으로부터, 튀니스 어젠다는 이러한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멀티-스테이크홀더 논의 포럼으로서 IGF의 설립을 요청했고, 이와 함께

가능한 빨리 진행되고 혁신에 호응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강화된 협력을 향한 광범위한 과정(broader process)을 요구했다. [이것은] 정부가 인터넷과 관련된 국제 공공정책 이슈에 동등하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국제 공공정책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상적인 기술적, 관리적 문제는 제외한다.⁴⁹⁾

또한 튀니스 어젠다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다자간 과정이어야 하며, 정부, 기업영역,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 조직이 각자의 역할 속에 참여해야 한다. 이 과정은 필요한 경우,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노력들의 협력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방식의 계속되는 활발한 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적절한 체제 혹은 장치의 설립을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원칙은 이 점에서 명확하다. 즉, IGF는 인터넷 공공정책이 토론되는 멀티스테이크홀더 포럼이라는 것 (그리고, 이 점은 잊혀지

48) 총회 결의안 A/RES/67/195,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http://unctad.org/meetings/en/SessionalDocuments/ares67d195_en.pdf.

49) 정보사회를 위한 튀니스 어젠다(2005), <http://www.itu.int/wsis/docs2/tunis/off/6rev1.html>.

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그 이슈들을 해결할 권고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모든 정부들이 “국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좀 더 참여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라는 것. 이를 촉진하는, 아마도 새로운 체제나 장치를 통해서.

비어있는 부분은 이 광범위한 과정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 이다. 정상회의에 자문을 했던 멀티-스테이크홀더 그룹이었던 인터넷거버넌스 워킹그룹(WGIG)은 4가지 선택지를 제출했다. 그 중 3가지는 세계적 인터넷 위원회의 변종들인데, 국가 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영역, 그러나 기존의 정부간 체제의 영역 밖에 있는 정책 이슈들을 중재한다. (미국의 논평가는 “인터넷에 대한 UN의 장악”이라고 비판했다.)⁵⁰⁾ 이 선택지들은 그러한 기구가 UN에 연결된 것인지 아닌지, 다른 비정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놀랍게도 강화된 협력 위임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한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진지하게 제기되지 않았고, 2011년에야 인터넷 관련 정책 위원회(CIRP)라고 불리는 인도 정부의 제안이 있었는데, 이는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IBSA 3자 그룹에 의해 같은 해에 제안된 초기 모델에 기반한 것이었다.

CIRP는 50개 멤버로 구성되는 정부간 기구이

고, IGF와 상호보완적이며, 시민사회, 기업영역, 정부간기구, 국제기구,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를 위한 자문 기구를 두었다. OECD의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가 이와 비슷한 방식의 구조인데, ICCP는 지역적으로 덜 포괄적이다.

CIRP 역시 “UN이 인터넷을 장악하다”라는 주장 속에 폐기되었다.⁵¹⁾ 정부에 편향적인 내재적 구조의 문제 이상으로, 그 제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영역을 넘나드는 인터넷 관련 세계적 이슈의 조정과 일관성을 보장”(이것은 필요하다)하는 것을 넘어, “세계적 표준 수립을 포함하여, 인터넷의 기술적, 운영적 기능을 책임지는 기구에 대한 조정과 감독”(이것은 그렇지 않다)까지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UN의 새로운 위임을 통해 강화된 협력 과정을 새롭게 검토할 워킹그룹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공공 및 민간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기존의 두 제안이나 현상유지보다) 좀 더 나은 균형을 찾기 위해, 특히 그 과정의 주요 목표로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을 포함하기 위해, WGIG과 CIRP 제안을 개선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필요성

그러한 제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출발점은 세계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과정을 보다 민

50) 레스너(Ilessner)를 보라, “UN이 인터넷을 장악하려고 한다”, 2005.8.17, <http://www.humanevents.com/2005/08/17/unpoised-to-take-over-the-internet/>.

51) 키렌 맥카시(Kieren McCarthy), “인도가 정부의 인터넷 장악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다”, 2011.10.27, <http://news.dotnxt.com/2011/10/27/india-proposes-government-control-internet>.

주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민주주의는 매우 간단하다. : 그것은 단지 책임성있고 투명한 과정을 요구한다. 그래서 어떤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 지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다. 그러한 결정은 또한 모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하다. 특히 세계적 공공정책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균형적으로 대표되는 것이 비현실적인 세계적 수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인터넷 거버넌스의 맥락에서는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 세계적 체제의 민주화를 위한 가장 나은 접근법이라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이 모델은 정책 개발 과정에서, 그들의 특정한 역할, 능력, 이해에 따라 대략 그룹화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견해를 포괄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관행과 문화로부터 나타나며, 강화된 협력 체제나 장치를 위한 어떤 제안을 계발하는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점은 민주적인 과정이 숙고적(deliberative)일 때 더 나은 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단지 자신의 선호를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권력 불균형이 가능한 한 제거된, 포괄적인 포럼에서 토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IETF와 같이 기술표준을 책임지고 있는 기존의 풀뿌리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는 본보기로 삼

을만한 좋은 모델을 제공한다. 물론 그들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 IETF는 포괄성(inclusivity)에 문제가 있으며, 자신 스스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IETF는 누가 이해당사자인지 확실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특정한 이해당사자 그룹이 다소 배제되어 왔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과정에서 중요한 의견을 제시했을 수도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IETF가 그들의 의견에 대해 적절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⁵²⁾

그래서, IETF, W3C(공개표준 원칙)⁵³⁾을 포함한 인터넷 표준 기구들의 최근의 시도는 지나치게 시장 중심적이며, 포괄성과 같은 더 넓은 공익 목적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시민사회 내에서 비판받아 왔다. 여기서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IETF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가, 심지어 매우 찬양을 받는 인터넷 기술 커뮤니티 조직조차 완전하게 구현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인터넷 기술 커뮤니티 외부로부터의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의 혁신에도 열려있어야 한다, 심지어 UN 시스템 내부로부터의 혁신들에도 그래야 한다. WGIG가 그러한 혁신이었음을 고려해보자 - 그것은 진정으로 멀티-스테이크홀더 그룹이었으며, 속

52) IETF, "IETF의 문제점 성명서", 2004년 5월, <http://www.apps.ietf.org/rfc/rfc3774.html>.

53) <http://open-stand.org/> 참조.

고적인 민주적 과정을 통해 정책 권고안을 발전 시켰다. 이는 전형적인 UN 외교 회의와는 사뭇 달랐다. WGIG는 직접 만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메일링리스트나 위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업을 수행했다. 그리고 문안에 대해 합의할 수 없었을 때에도 - 대표적으로 ICANN의 미래에 대해서 - 대화의 단절이나 교묘한 말로 이루어진 타협적 선언에 이르지 않고, 추가적인 논의를 위한 재료로서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강화된 협력을 위한 균형 잡힌 멀티-스테이크홀더 체제 혹은 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제한 하에서 작업해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 - 그것은 튀니스 어젠더의 다음과 같은 선언이다.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정책 권한은 국가의 주권이다. 그들은 국제적인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있다.” 이것은 많은 인터넷 자유 활동가들이 수용하기 힘든 명제이다. 그러나 WSIS에 참여한 모든 정부 참여자들이 (그렇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에 동의했다. 심지어 그 이전에도, 사실 2000년 즈음에도 국가 도메인에 대한 효과적인 주권 선언을 통해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한 바 있다.⁵⁴⁾

궁극적으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세계적 거버넌스에서 국가가 지배적인 역할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초국경적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관장할 규칙과 원칙들에 대한 협상을 하는

그러한 세계를 보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러한 세계는 아직 실현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는 균형에 달려있다. 특히 우리가 시장, 기술, 규범과 같은 비국가적 거버넌스 체제(이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지하기 힘들다)에 제한받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당분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좀 더 폭넓은 정부의 역할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역할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이해당사자와 가능한 동등한 역할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WGIG는 이러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이전의 선례를 가지고 있다. -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설립 이후부터 시민사회와 산업계 대표들을 완전한 투표권을 가진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은 정책 수립 과정에 일반 국민을 완전하고 동등한 이해당사자로 대우하는 정부간 기구의 또 다른 사례이다.⁵⁵⁾

구체적인 제안의 필요성

그래서 시민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창조적으로 되는 것이다. 결국 튀니스 어젠더는 정부 사이의 합의였다. (시민사회는 WSIS 최종 문서를 반대하는 독자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만큼

54) ICANN 정부자문위원회(GAC), 국가도메인의 위임과 관리 원칙, 2000.2.23, <http://www.icann.org/committees/gac/gac-cctldprinciples-23feb00.htm>.

55) 공식적으로 정보접근에 대한 UNECE 협약, 정책 결정 과정에의 공공의 참여 및 환경 문제 정의(justice)에 대한 접근 (1998), <http://www.unece.org/env/pp/treatytext.html>.

적어도 다른 이해당사자들은 문구의 유연한 해석을 주장할 수 있다. 세계적 인터넷 정책 개발을 위한 균형잡힌 체제를 위해 제안될 수 있었고, 제안되어야만 하는 많은 선택지들이 있다. - 몇 가지만 언급한다면, 위키피디어 방식의 협력 프로젝트, 해당 방식의 유연한 민주주의(liquid democracy), 혹은 기트허브(Github :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협력 플랫폼)에 영감을 받은, 우수 사례(best practice) 문서의 응용 등. 최근에 시민사회가 제안한 강화된 협력 작업반(ECTF)은 IETF의 절차모델을 상당히 빌려온 것이다. - 그러면 왜 안되는가?⁵⁶⁾

내 견해를 말하자면, 내 연구(및 정부가 무엇을 수용할 것이고, 무엇을 수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경험)에 따라, 연합 혹은 합의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조직 형식을 선호한다. 이것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정책 입장을 개발하는 구조이면서, 각 그룹에 서로 관심이 있는 제안에 대한 거부권을 효과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별 이해당사자 그룹이 합의에 이를 것을 요구하는 구조이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정부로 하여금 강화된 협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다른 이해당사자 그룹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아이디어를 처음 발전시킨 문서 320쪽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초국경적 네트워크의 적절한 구

조는, 모든 이해당사자 그룹의 멤버들이 합의를 목적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포럼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는 각 그룹이 합의에 의해 혹은 민주적 수단으로 지명한 대표로 이루어진 능력있는 집행 위원회가 주도하며, 포럼의 모든 결정은 합의에 의해 승인될 필요가 있다.⁵⁷⁾

이와 같은 그룹은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편이상 IGF에 부속될 수 있다. 이것은 세계적 수준에서 공공정책 원칙의 개발을 위한 민주적이고, 멀티-스테이크홀더 과정이 없는 영역만을 담당한다. 이것은 규제자, 온라인 사업자, 그리고 정책을 일관성있고 조정되는 방식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는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과 인권을 고려하는 원칙들에 대해 가능한 한 합의를 찾으려 노력한다. 그 권고의 실제 이행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분산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각 개별 이해당사자 그룹에 의한, 그 그룹 자체가 동의한 어떠한 절차에 따른, 해당 권고안의 승인 여부에 의존할 것이다.

물론 이는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이건 그 나름의 단점이 있다. 요점은 이 특정한 제안을 다른 것들을 배제하면서 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된 협력 위임사항을 진전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제안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

56) <http://enhanced-cooperation.org/RFA/1.html> 참조. 나는 이 제안서의 감사인사 부분에서 언급되었다.

57) 제레미 말콤,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와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Terminus Press, 2008), p.320.

리의 머리를 모래 속에 박고, 그 위임사항이 없 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올해 1월에 CSTD 의장은 강화된 협력 워킹그룹을 개시하기 위한 이미 수립된 절차의 개요를 서술했는데, 이는 어떤 식으로든 강화된 협력 위임사항이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의 진화를 통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⁵⁸⁾ 다음 단계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세계적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에서 공공 이익을 대표하기 위한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생산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혹은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면서 그러한 체제가 1998 년과 같은 형태로 영원히 고정될 것을 고집할 것인가?

우리의 결정이 무엇이든, 그것은 인터넷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사회가 세계적 거버넌스 체제와 장치의 중대한 변화를 옹호할 수 있는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지뢰 금지 조약은 시민사회의 노력이 없었 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⁵⁹⁾ 장애인 협약⁶⁰⁾ 역시 마찬가지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좀 더 특수한 맥락에서, 우리는 브라질의 국가 수준에서 마르코 시빌(인터넷에서의 시민권리 옹호를 위해 국회에 제안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싸웠던 이들의 노력을 본받아야 한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말이다.⁶¹⁾

우리가 SOPA, PIPA, ACTA에 반대하는 투쟁 을 확대한 것과 같이, 네트워킹, 로비, 홍보,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 제안들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옹호 활동의 대상은,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의 진화를 자연스럽게 의심하고 “인터넷을 장악”하려 한다는 소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 하는 광범한 인터넷 이용자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CSTD 워킹그룹, IGF MAG, 국내 정부, 산업계 그룹, 인터넷 기술 커뮤니티를 포함할 것이다.

결론

국가 시대에 인터넷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투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반드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부정적이고, 대응적인 접근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증가하는 위협의 공세를 영원히 방어하는데 우리의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소진하고 말 것이며, 그러한 위협을 야기하는, 기저에 있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다룰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장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제안 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

58) http://unctad.org/en/pages/newsdetails.aspx?OriginalVersionID=391&Sitemap_x0020_Taxonomy=Commission%20on%20Science%20and%20Technology%20for%20Development 참조.

59) 공식적으로, 인명살상용 지뢰의 이용, 비축, 생산, 이전의 금지 및 파괴에 대한 협약(1997). 1992년에 6개 NGO에 의해 시작된 세계적 네트워크인 지뢰 금지 국제 캠페인은 이 조약을 이끈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http://www.icbl.org/> 참조.

60) 유사하게도, 장애인 권리 협약(2006)은 전 해의 5개 국제 장애인 NGO의 요청에 따라 2001년 총회에서 시작되었다.

61) <http://culturadigital.br/marcocivil/> 참조.

한 제안은 국가적 수준에서만큼, 세계적 수준에서도 발전되어야 한다.

국가들이 ITU에 눈을 돌리기 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멀티-스테이크홀더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의 포괄적인 네트워크가 이미 존재한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의 자연스러운 진화를 더 이상 억제하지 않도록 그것이 폭로될 필요가 있다. 기술 영역 밖에서는 아직 멀티-스테이크홀더 과정이 없는데, 이해당사자들에게 멀티-스테이크홀더 과정을 통해서 관심있는 정책 이슈들을 다루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이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인터넷 거버넌스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이러한 요구가 그냥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술표준과 인터넷 자원의 할당 영역의 기존의 멀티-스테이크홀더 기구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 영역 밖에서 모든 정부들과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더 세계적으로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체제 혹은 장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충분한 여지가 있고, 매우 긴급한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의 진화적인 확장은, 그것이 충분히 숙고적이고 투명하다면, 억압과 통제에 기반한 정부의 제안들을 드러내고 제거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멀티-스테이크홀더의 관문을 결코 통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동시에, 그 권한이 그것들의 구현이나 집행이 아니라 원칙의 개발에 제한될지라도 말이다. 이것은 또한 미래에 ACTA나

TPP와 같은 새로운 배제적인 과정의 출현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최소한 (배제적인 과정들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보다 쉽게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다.

“인터넷 자유” 문화적 전통이 이런 필수 업무를 담보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상향식의 규범 정립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중요하고 계속되는 전통이지만, 그러한 규범이 국가의 법이나 산업 관행에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범 정립에 공식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정치적인 과정의 일정한 형식이 때때로 요구된다. 어쨌든 자유뿐만 아니라 권리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중요하고, 어떤 지점에서는 이러한 권리들을 법률입안자, 산업 및 기술 커뮤니티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공공정책 원칙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민주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현상유지가 지속가능하다는 잘못된 가정 하에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의 진화를 위한 제안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면서 우리가 이것에 눈감고 있는 한, 우리는 ITU가 세계적으로 적용가능한 인터넷 공공정책 원칙들을 권위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적 기구가 될 수 있는 위협에 놓일 수 있다.

그 대신에, 우리는 ITU보다 더 나은, 진정으로 멀티-스테이크홀더 대안을 설계하는데 협력할 수 있다. 이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숙고적이고 민주적인 포럼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중요한 공공정책 이슈들에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할 수 있는, 더 사려깊고, 정당하며, 포괄적인 권고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견본은 없다. 그것은 IGF의 기존 MAG을 강화하는 것, 이전 섹션에서 대략 그려본 바와 같이 합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부속 기구의 개발, 혹은 누구나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새로운 체제나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나는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당신도 참여하겠는가?